5·18 중요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민간 매각 위기

2차 매각 공고…1차 입찰 불참 광주시 뒤늦게 예비비 편성
"市 소극적 행보에 낙찰 불투명" 지적 속 5월단체 보존 촉구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11호인 광주시 동구 불로동 구 적십자병원에서 22일 5·18단체가 민간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 11호인 '구 광주적십자병원'〈광주일보 2019년 8월 28일자 6면〉이 민간에 매각될 위기에 놓였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5·18 사적지에 대한 중요성을 내세워 민간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측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

2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등에 따르면 청산인측은 법인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88억 규모의 '(학)서남학원 재산(불로동 녹십자병원-최저입찰가 88억 4944만 9340원)'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3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냈던 1차 매각 공고 당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데 따른 2차 공고다. 서남학원측은 다음달 4일 청산사무소에서 개찰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동구 불로동 구 적십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곳"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부상자들을 수술할 피가 부족하자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했던 곳이기도 하다.

광주시의 소극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뤄졌던 1차 매각 공고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매입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입찰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 1월만 해도 '90억원 규모의 적십자병원 건물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미확보했고 사전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입찰 참여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남학원 청산인측도 광주시에 사전에 2차 입찰 시기를 알려줬음에도 예산 확보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입찰공고가 나오고서야 예비비 집행 계획을 세우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데 따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산인측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사적지 보존의 중요성을 감안, 애초 지난해 10월 20일인 1차 입찰 마감 일정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늦추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청산인측은 "임금 지연이자만 20%가 발생하는 상황에 지금까지 100억원 상당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교직원 등의 미지급 임금, 물품 매각 대금 등의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 매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관련, 일단 예비비를 활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지만 최저 입찰가를 넘어선 응찰자가 나설 경우 사실상 낙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적지 보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경쟁입찰 방식이다보니 민간 매각자가 광주시가 예상하는 매각금액 90억원 이상으로 응찰할 경우 광주시는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9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고 입찰가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판단할수 없어 감정 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955년 개원한 적십자병원은 지난 1996년 4월 서남학원재단에 인수돼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운영됐다. 이 후 경영악화로 2014년 휴업에 들어갔고 서남학원은 경영 부실 등으로 2018년 교육부 법인 해산, 폐교 결정에 따라 자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참여 학업 중단 학생 32명 40년만에 명예졸업장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학업을 중단한 당시 학생들이 40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5·18 당시 부득이하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5·18 40주년을 맞아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기간에 학생들은 시민군의 일원으로 헌혈, 간호, 사망자 수습, 선전 활동 등에 다양하게 참여했고, 그 결과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5·18 학생 기념탑(2005년 준공)에 수록된 247명(56개교)의 학생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졸업 여부 및 학적 현황, 명예졸업장 수여 여부 등을 지난해 12월부터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자 247명 중 정식으로 졸업장을 수여받은 학생은 175명, 이후 명예졸업장을 수여 받은 학생은 15명으로 확인됐다. 1980년 5·18 이전 학업 중단자 및 전학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명예졸업장을 받을 1차 대상자 32명(20개교)의 명단을 정리했다.

시 교육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18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의 확인 절차 및 해당 학교와 협의를 거쳐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명예졸업장 수여를 포함해 5·18 학생 참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그날 선착장선 무슨 일이…타살인가, 사고인가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탄 승용차 바다로 밀어 살해 혐의 남편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고
재판부, 경사로 실험 현장검증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인정
검찰 상고 예고…대법 판단 주목

고의인가, 실수인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남성의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고 판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위적(살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차를 고의로 밀어 빠뜨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A씨가 하차할 당시 정차 상태였던 승용차가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 하차하고 문을 닫을 때 충격 등으로 차량이 스스로 (경사로를)굴러내려가는 지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차를 밀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험 차량을 추락 방지용 난간에서 0.5m 떨어진 곳에 중립 기어 상태로 세웠을 때는 조수석 탑승자가 움직여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으나 1.5m 거리에 세우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떼자마자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다.

난간으로부터 1∼1.2m 떨어진 곳에서는 조수석 탑승자가 한차례 움직이자 실험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도 했다.

범행방법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위장하고자 했다면 범행장소나 실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미리 작심한 범인이 택하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만조 때와 간조 때 경사면 끝자락이 잠기는 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을 때 피해자 탈출 가능성, 바닷물 깊이가 충분히 깊은지 등을 검토해뒀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1심이 피해자 사망으로 지급될 10억원 넘는 사망보험금을 가장 주된 동기라는 취지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형성되었으리라는 점을 수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조행위에 대해서도 1심은 'A씨가 바다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탓하는 내용도 119 신고 내용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사고 직후 A씨가 인근 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할 당시 옷과 머리가 물에 젖은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사고가 아님을 뒷받침할 간접사실 등도 존재한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선착장 경사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정차한 곳 경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채 그대로 내린 과실로 차량이 추락, 피해자가 익사하게 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차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서 화장실서 도주 피의자 하루 만에 검거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의자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검찰 수사관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5시 사이 목포경찰서 청사에서 공갈 혐의로 재판을 앞둔 A(21)씨가 도주했다.

A씨는 올해 3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최근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A씨는 검찰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피의자가 달아났는데도 쉬쉬하다 도주 하루가 지나서야 A씨를 붙잡아 경위를 확인중이다.

/남악=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